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이한나 전문연구원
(leehn@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서론
2. 주요 내용 및 특징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2020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23일부터 시행
 - 특히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후에 발표한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임.
-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진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자동차 제조 분야는 과도기적인 개방 목표를 제시
 - 투자금지 분야였던 △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 항공교통 관계 항목을 삭제하여 개방 분야를 확대
 - 금융 분야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내 개방 로드맵보다 1년 빠르게 외국인 지분 제한을 취소
 - 그 외 지분에 제한을 두었던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 △ 상용차 제조 분야의 지분 제한을 전면 취소(승용차 제조 분야는 2022년까지 지분 제한 및 합자 법인 수량(2개 이하)에 대한 제한을 취소할 것임을 명시)
 - 그러나 합자나 합작이 모두 가능했던 의료기관, 시장조사 분야는 합자만 허용
 - 한편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농·어업, 인쇄업, 증의약,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개방도가 더 높은 수준임.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 「외국인투자법」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업의 대외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 글로벌 투자 기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축소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
 -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우리 정부는 진행 중인 한·중 FTA 후속협상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하여 중국의 개방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업은 리스트의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1. 서론

- 2020년 6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23일부터 시행¹⁾
- 중국은 18기 3중 전회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시행을 추진해옴.
- 특히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법」과 관련 조례 발표 후의 첫 번째 네거티브 리스트로서 「외국인투자법」 정착을 촉진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정의(제4조)하고, 구체적인 합의(제28조)를 명확히 설명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²⁾
-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금융업의 대외 개방 조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금융업의 대외 개방 로드맵보다 빠르게 금융업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삭제하여 개방을 확대

글상자 1.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 현재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FTZ 네거티브 리스트로 총 3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자·외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 주체에 적용되며, 2018년에 제정된 후 2019년에 한 차례 수정을 거침.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전 지역의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FTZ 범위 내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경우 FTZ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그 외 모든 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

2. 주요 내용 및 특징

-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9년 리스트와 비교하여 다음의 3가지 변화를 주목할 만함.
 - ①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허용한 분야라고 할지라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허가·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부처의 역할(심사)을 명확히하고 관리를 강화함.

1)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2) 「외국인투자법」 제28조: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중 투자금지 분야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이며, 투자제한 분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국내의 일치된 원칙에 따라 관리.

- [‘설명’ 제4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허가, 기업 등록 등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
- ② 외국인투자의 여러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 관리 규정(‘설명’ 제5조)을 추가함.
- [‘설명’ 제5조] ‘국무원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된 특정 외국인투자는 네거티브 리스트 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 이로써 중국 투자자가 해외에 설립한 회사(주식회사, 지주회사 등)의 역외투자도 외국인투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③ 중국이 체결한 경제무역협정, 국제조약 등 협정에 대해서는 기존(2019년판)과는 다르게 시장 진입 시 더 높은 우대조치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중국정부가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둠.
- [‘설명’ 제8조] ‘홍콩·마카오·대만과 체결한 경제무역협정(후속 협상 포함), 중국이 체결·참여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우대조치가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고 명시
- 2019년판 리스트에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조치를 실행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2020년판에는 기존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임.

글상자 2.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구성

□ ‘네거티브 리스트’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설명(총 9개 조항)’과 실제 분야별 투자 금지·제한 리스트로 구성

- 2020년 리스트의 ‘설명’ 부분은 2019년 8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수정·조정

설명	리스트																																												
<p style="text-align: center;">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负面清单) (2020年版)</p> <p style="text-align: center;">说 明</p> <p>一、《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以下简称《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统一列出股权要求、高管要求等外商投资准入方面的特别管理措施。《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之外的领域,按照内外资一致原则实施管理。</p> <p>二、《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对部分领域列出了取消或放宽准入限制的过渡期,过渡期满后按时无效或放宽其准入限制。</p> <p>三、境外投资者不得作为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投资人、农民专业合作社成员,从事投资经营活动。</p> <p>四、有关主管部门在依法履行职务过程中,对境外投资者拟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内领域,但不符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的,不予办理许可、企业登记注册等相关事项;涉及固定资产投资项目的,不予办理相关核准事项。投资有股权要求的领域,不得设立外商投资合伙企业。</p> <p>五、经国务院有关主管部门审核并报国务院批准,特定外商投资可以不适用《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中相关领域的规定。</p> <p style="text-align: center;">- 1 -</p>	<p style="text-align: center;">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0年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序号</th> <th>特别管理措施</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一、农、林、牧、渔业</td> </tr> <tr> <td>1</td> <td>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生产的中方股比不低于34%。玉米新品种选育和种子生产由中方控股。</td> </tr> <tr> <td>2</td> <td>禁止投资中国稀有和特有的珍贵优良品种的研发、养殖、种核以及相关繁殖材料的生产(包括种畜禽、整胎畜、水产类的优良基因)。</td> </tr> <tr> <td>3</td> <td>禁止投资农作物、种畜禽、水产良种基因品种选育及其基因种子(苗)生产。</td> </tr> <tr> <td>4</td> <td>禁止投资中国资源海域及内陆水域水产品捕捞。</td> </tr> <tr> <td colspan="2">二、采矿业</td> </tr> <tr> <td>5</td> <td>禁止投资稀土、放射性矿产、铀矿、页岩及煤矿。</td> </tr> <tr> <td colspan="2">三、制造业</td> </tr> <tr> <td>6</td> <td>出版物印刷业由中方控股。</td> </tr> <tr> <td>7</td> <td>禁止投资中药饮片的生产、炒、炙、煅等炮制技术的应用及中成药保密处方的生产。</td> </tr> <tr> <td>8</td> <td>除专用车、新能源汽车、商用车外,汽车整车制造的中方股比不低于50%。同一外商可在国内建立两家及两家以下生产同类整车产品的合资企业。(2022年起取消乘用车制造外资股比限制以及同一外商可在国内建立两家及两家以下生产同类整车产品的合资企业的限制)</td> </tr> <tr> <td>9</td> <td>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及支撑性生产。</td> </tr> <tr> <td colspan="2">四、电力、热力、燃气生产和供应业</td> </tr> <tr> <td>10</td> <td>输电线路的建设、运营由中方控股。</td> </tr> <tr> <td colspan="2">五、批发和零售业</td> </tr> <tr> <td>11</td> <td>禁止投资烟草、卷烟、复烤烟叶及其他烟草制品的批发、零售。</td> </tr> <tr> <td colspan="2">六、交通运输业、仓储和邮政业</td> </tr> <tr> <td>12</td> <td>国内水上运输公司须由中方控股。</td> </tr> <tr> <td>13</td> <td>公共航空运输公司须由中方控股,且一家外商及其关联企业投资比例不得超过24%;法定代理人须由中国籍公民担任。通用航空公司的法定代表人须由中国籍公民担任,其中农、林、渔业通用航空公司限于合资,其他通用航空公司限于中方控股。</td> </tr> <tr> <td>14</td> <td>民用机场的建设、运营由中方相对控股,外方不得参与建设、运营机场塔台。</td> </tr> <tr> <td>15</td> <td>禁止经营邮政公司、快递的国内快递业务。</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2 -</p>	序号	特别管理措施	一、农、林、牧、渔业		1	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生产的中方股比不低于34%。玉米新品种选育和种子生产由中方控股。	2	禁止投资中国稀有和特有的珍贵优良品种的研发、养殖、种核以及相关繁殖材料的生产(包括种畜禽、整胎畜、水产类的优良基因)。	3	禁止投资农作物、种畜禽、水产良种基因品种选育及其基因种子(苗)生产。	4	禁止投资中国资源海域及内陆水域水产品捕捞。	二、采矿业		5	禁止投资稀土、放射性矿产、铀矿、页岩及煤矿。	三、制造业		6	出版物印刷业由中方控股。	7	禁止投资中药饮片的生产、炒、炙、煅等炮制技术的应用及中成药保密处方的生产。	8	除专用车、新能源汽车、商用车外,汽车整车制造的中方股比不低于50%。同一外商可在国内建立两家及两家以下生产同类整车产品的合资企业。(2022年起取消乘用车制造外资股比限制以及同一外商可在国内建立两家及两家以下生产同类整车产品的合资企业的限制)	9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及支撑性生产。	四、电力、热力、燃气生产和供应业		10	输电线路的建设、运营由中方控股。	五、批发和零售业		11	禁止投资烟草、卷烟、复烤烟叶及其他烟草制品的批发、零售。	六、交通运输业、仓储和邮政业		12	国内水上运输公司须由中方控股。	13	公共航空运输公司须由中方控股,且一家外商及其关联企业投资比例不得超过24%;法定代理人须由中国籍公民担任。通用航空公司的法定代表人须由中国籍公民担任,其中农、林、渔业通用航空公司限于合资,其他通用航空公司限于中方控股。	14	民用机场的建设、运营由中方相对控股,外方不得参与建设、运营机场塔台。	15	禁止经营邮政公司、快递的国内快递业务。
序号	特别管理措施																																												
一、农、林、牧、渔业																																													
1	小麦新品种选育和种子生产的中方股比不低于34%。玉米新品种选育和种子生产由中方控股。																																												
2	禁止投资中国稀有和特有的珍贵优良品种的研发、养殖、种核以及相关繁殖材料的生产(包括种畜禽、整胎畜、水产类的优良基因)。																																												
3	禁止投资农作物、种畜禽、水产良种基因品种选育及其基因种子(苗)生产。																																												
4	禁止投资中国资源海域及内陆水域水产品捕捞。																																												
二、采矿业																																													
5	禁止投资稀土、放射性矿产、铀矿、页岩及煤矿。																																												
三、制造业																																													
6	出版物印刷业由中方控股。																																												
7	禁止投资中药饮片的生产、炒、炙、煅等炮制技术的应用及中成药保密处方的生产。																																												
8	除专用车、新能源汽车、商用车外,汽车整车制造的中方股比不低于50%。同一外商可在国内建立两家及两家以下生产同类整车产品的合资企业。(2022年起取消乘用车制造外资股比限制以及同一外商可在国内建立两家及两家以下生产同类整车产品的合资企业的限制)																																												
9	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及支撑性生产。																																												
四、电力、热力、燃气生产和供应业																																													
10	输电线路的建设、运营由中方控股。																																												
五、批发和零售业																																													
11	禁止投资烟草、卷烟、复烤烟叶及其他烟草制品的批发、零售。																																												
六、交通运输业、仓储和邮政业																																													
12	国内水上运输公司须由中方控股。																																												
13	公共航空运输公司须由中方控股,且一家外商及其关联企业投资比例不得超过24%;法定代理人须由中国籍公民担任。通用航空公司的法定代表人须由中国籍公民担任,其中农、林、渔业通用航空公司限于合资,其他通用航空公司限于中方控股。																																												
14	民用机场的建设、运营由中方相对控股,外方不得参与建设、运营机场塔台。																																												
15	禁止经营邮政公司、快递的国内快递业务。																																												

■ 리스트에 따르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금융)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자동차 분야는 과도기적인 개방 목표를 제시함.

-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9년 40개에서 2020년 33개로 7개 항목이 축소 조정
 - 총 6개 조항이 삭제되었고, 2개 조항은 1개 항목으로 통합
- 투자금지 분야였던 △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 항공교통 관제 항목을 삭제하여 개방 분야를 확대
- 예상대로 금융 분야(증권회사·증권투자자금관리회사·선물회사·생명보험회사)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내 개방 로드맵보다 1년 빠르게 외국인 지분 제한을 취소
 - 2019년 리커창 총리는 금융 분야의 지분 제한을 리스트보다 앞당겨 철폐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음.³⁾
- 그 외에도 외자지분에 제한을 두었던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 △ 상용차 제조 분야의 지분 제한을 전면 취소
- [농업] 소맥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에서 34% 이상으로 지배 비율을 완화했는데, 이는 2019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먼저 시행되었던 조치로, 이번 리스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승용차 제조 분야는 2022년까지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수량(2개 이하)에 대한 설립 제한을 취소할 것이라고 명시
- 그러나 합자나 합작이 가능했던 의료기관, 시장조사 분야는 합자만 가능해짐.

표 1.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 허용 및 규제 완화 내용

분야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삭제된 내용
농업	1. 소맥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전체 조항 중 일부 내용, 과반 지분 → 중국 측 34% 이상으로 변경)
제조업	7.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9. 상용차 제조 지분 제한
전력·열에너지·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업	12.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교통운수	18.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금융	22.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자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3.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24.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 제한 취소)

주: 표 내용 중 각 문구 앞의 숫자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표기에 따른 것임.

자료: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3) 「李克强在第十三届夏季达沃斯论坛开幕式上的致辞」(2019. 7. 3), 『中国政府网』.

- ‘FTZ 네거티브 리스트’도 지속적으로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리스트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농·어업, 인쇄업, 중의약, 교육, 문화 분야에서 개방도가 더 높음.
-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9년 37개에서 2020년 30개로 7개 항목이 축소 조정
- 2019년 이미 전국 범위 리스트보다 개방 수준이 높았던 농·어업, 인쇄업, 문화 분야는 높은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표 2 참고)
- 2020년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투자금지 항목인 중의약에 대한 투자금지를 취소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도 학제류 직업교육기관에 한해 외국인의 독자 투자를 허용
- 또한 FTZ 리스트 내 일부 항목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관련 법규의 내용을 추가한 것임.
- 관련 보충 설명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표 2. 2020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분야

분야	2020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 내용	적용
농업	옥수수 싹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외자 지분을 66%까지 허용	2019년~
어업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2019년~
인쇄업	출판물 인쇄업에 대해 중국 측 과반 지분 조건 취소	2019년~
중의약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투자금지 취소	2020년
교육	비학제 직업기술 훈련기관(2019~)과 학제류 직업교육기관에 한해 외국인의 독자 투자 허용	2020년
문화	문화예술 공연단체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중국 측 과반 지분 조건으로 허용	2019년~

자료: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20),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3. 평가 및 전망

- 이번 2020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 「외국인투자법」의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업의 대외 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 2020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은 기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대체한 외국인투자 분야의 기본법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공식화함.

- 이번 리스트에서는 국무원의 금융업 개방 확대정책 기조를 이어 2020년 1월부터 취소된 생명보험회사, 선물회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도 삭제 조정함.
-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는 보다 넓은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중국 내 전문가는 리스트의 항목 축소(개방 확대)가 정부의 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해외 투자를 회복시켜 글로벌 공급체인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⁴⁾

■ 글로벌 투자 기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제한 항목이 축소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계획

-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주로 지분 제한을 취소·완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
- 14·5 기획 건의문에서도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며, 해외 투자를 촉진·보장하는 법률·정책·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강조⁵⁾
- 또한 발개위 등 중앙부처에 따르면 계속해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을 확대할 것이며, 추가로 2020년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도 제정·발표할 계획임을 밝힘.⁶⁾

■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후속협상 과정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하여 중국의 개방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업은 리스트의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진출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시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준으로 홍콩·마카오와의 CEPA, 대만과의 ECFA 등 조치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한국 측 양허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관리방안」 등 중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치 등에서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일부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출 지역을 감안하여 리스트와 개방조치를 참고해야 함.
- 중국은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해 시범적으로 FTZ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풀어준 후 후속으로 전국 범위에서 허용하는 점진적 개방의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방 시범 분야(특히 학제류 직업교육기관 등)의 향후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KIEP**

4) 「我国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再压减17.5%」(2020. 6. 26), 『人民日报』.

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2020. 11. 3), 『新华社』.

6) 「发改委印发《近期扩内需促消费的工作方案》(全文)」(2020. 10. 29), 『新浪财经』.

[부록]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분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FTZ 네거티브 리스트
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맥(밀)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이 34% 이상이어야 함. 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변식용 농산물, 가축, 수산물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맥·옥수수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이 34% 이상이어야 함.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변식용 농산물, 가축, 수산물의 생산
二. 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투자금지] 희토·방사성 광물·텅스텐 탐사, 개발 및 채굴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투자금지] 희토·방사성 광물·텅스텐 탐사, 개발 및 채굴
三. 제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7. [투자금지] 중앙 제조방법의 응용 및 증성약 처방 생산 8. 특수목적 차·신에너지 자동차·상용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 제한 취소). 9.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특수목적 차·신에너지 자동차·상용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 제한 취소). 6.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四. 전력·열에너지·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五. 도소매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투자금지] 연초, 필러, 구운 담뱃잎, 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투자금지] 연초, 필러, 구운 담뱃잎, 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六. 교통운수, 창고업 및 우정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3.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단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 항공회사의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임업·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4.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외국 측은 공항 관제탑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 15.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국내 택배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중국 국적 임차 운영 금지, 외국선박 이용 금지 등) 10.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과반 지분을 확보, 단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중국기업만 국내 항공서비스 경영, 중국 지정 운송인 정기·비정기 항공서비스 제공 가능). 항공회사의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임업·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1.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외국 측은 공항 관제탑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 12.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국내 택배 업무
七.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 한해 개방.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전달업, 콜센터 등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7.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 한해 개방.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전달업, 콜센터 등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경영자는 기초통신사업 전문회사여야 함), 상하이 FTZ의 기초 통신사업 분야의 시범정책을 모든 FTZ로 확대 14.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

분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FTZ 네거티브 리스트
	표 서비스	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
八.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18.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 불가능 19.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율·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20. [투자금지] 사회조사	15.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 불가능(외국 변호사는 대표기구 방식만 가능, 중국변호사 채용 금지, 대표기구 설립 시 허가 필요) 16.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율·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7. [투자금지] 사회조사
九. 과학연구와 전문기술 서비스	21.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22.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3.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측량, 지형도, 지역행정지도, 지질도 등 조사(광업권이 있는 사람은 광업권 범위 내에서 이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음.)	18.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19.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0.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측량, 지형도, 지역행정지도, 지질도 등 조사(광업권이 있는 사람은 광업권 범위 내에서 이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음.)
十. 교육	24.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만 허용,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25.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21.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만 허용(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외국교육기관이 중국인 대상 모집 금지(비합작 직업기술 훈련기관, 학제류 직업교육기관은 제외), 단 합작 형태는 가능 22.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十一. 위생 및 사회사업	26.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23.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十二.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27. [투자금지] 언론사 28. [투자금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음향·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9.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TV 방송국, 라디오·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 30. [투자금지] 라디오·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 31.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배급회사·상영회사 및 영화수입사업 32.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33. [투자금지] 문화예술 공연단체	24. [투자금지] 언론사(언론사·기자 상주 시 승인 필요, 뉴스 서비스 제공 시 심사 필요, 외국 언론사와 업무 협력 시 중국 주도 및 정부 비준 필요) 25. [투자금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음향·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합작회사는 정부 비준 후 협력 프로젝트 추진 가능) 26.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TV 방송국, 라디오·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해외 위성 채널수신은 심사제도 실시) 27. [투자금지] 라디오·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해외 프로그램 수입 및 위성전송방송프로그램 수입은 지정 기관에 신고·드라마 중외공동제작의 허가제도 실시) 28.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배급회사·상영회사 및 영화수입사업(단, 비준 허가 후 중외합작영화 촬영 및 제작 허용) 29.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문화재의 외국인 앞 양도·대여, 처당권설정 금지, 무형문화유산 조사기구 설립 및 경영 금지, 중국 내 무형문화재 조사, 고고학 조사·탐사·발굴은 중국과 합작하는 형태로 전문 심사기관의 비준·허가 필요) 30. 문화예술 공연단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참고자료]

- 이한나, 김홍원. 2019.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EI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22.
-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 2018.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중심으로」. KIEP 기초자료 18-22.
- 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 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 _____. 2019.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 _____. 2020.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 _____. 2020.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 「一文弄清几个最新“负面清单”的关系(2020更新版)」. 2020. 『君合法律评论』. (6月 28日).
- 「发改委印发《近期扩内需促消费的工作方案》(全文)」. 2020. 『新浪财经』. (10月 29日)
- 「我国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再压减17.5%」. 2020. 『人民日报』. (6月 26日)
- 「李克强在第十三届夏季达沃斯论坛开幕式上的致辞」. 2019. 『中国政府网』. (7月 3日)
-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 2020. 『新华社』. (11月 3日)
- 「推进更高水平对外开放 以开放促改革促发展——国家发展改革委有关负责人就2020年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答记者问」. 2020. 『中国政府网』. (6月 24日)